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1.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2.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00-000-0000

위 제도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 신청서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소장 접수 전 <input type="checkbox"/> 소장 접수 후
통역 지원이 필요한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통역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어느 단계에서 지원되기를 희망하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소송구조와 관련한 상담시 <input type="checkbox"/> 재판시 <input type="checkbox"/> 소송구조와 관련한 상담, 재판시 모두

2010 년월 일

신청인: (서명)